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52948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6294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58,41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

판사 김○○

판사 이○○